

#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(상속이전) 공시송달 공고

자동차관리법 제12조(이전등록)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(이전등록 신청)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다 음

1. 공고명칭 :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(상속이전) 공고
2. 공고기간 : 2018.12.20. ~ 2019.01.04.(15일간)
3. 공고대상

연번	차량번호	소유자 (사망자)	주 소	비고
1	제주50가9107	김**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*길	
2	56라7055	김**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*길	
3	47우5313	김**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*로	
4	66저6808	김**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*길	
5	77도8217	박**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*로	
6	32러0269	부**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*로	
7	10도6349	부**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*로	
8	62로1937	손**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사*길	
9	10구9485	손**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가령*길	
10	41오6712	양**	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*로	
11	35소4223	우**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*길	
12	67마5540	윤**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흥동*길	
13	56라7737	이**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*길	
14	제주27마3994	임**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*길	
15	56마0142	장**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*길	
16	45거2575	허**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*로	

## 4. 공고내용

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동의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완료하거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말소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상속절차를 이행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운행정지, 범칙금 부과, 운행자

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★ 상속이전등록 기간 경과 시 범칙금 최고 50만원 부과

<구비서류>

- ▶ 이전등록신청서   ▶ 자동차 상속동의서(상속인, 상속포기인 도장날인)
- ▶ 자동차등록증     ▶ 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각 신분증사본
- ▶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▶ 책임보험가입증명서(상속인 명의)

★ 상속자 미 방문 시 상속자 인감증명서 및 도장(날인), 위임장 첨부 ★

5. 문의처 :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 이전등록 담당자(☎064-728-8409)

2018년 12월 20일

제 주 시 장